

현장일용직 1개월8일기준



일용직관련 법규정

건강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및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 및 사용자

상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면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8일 이상 근로했지만 1개월 미만 근로시 가입대상이 아니게 된다.

8일이상 근무를 판단할 경우 사업장적용신고 된 현장: 현장별8일 이상 사업장적용신고 안된 현장 (본사로 신고): 월별 8일 이상을 판단한다.



취득일에 관한 판단

A: 10월2일부터 11월2일까지 기간동안 8일이상 근로했다면 10/2로 취득신고, 11월 소득월액 쓰기, 상실일 11/3일 보험료는 1일날짜로 부과되니 11월달 한달분만 납부함.

만약에 B라는 일당 10만원씩 받는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10월2일부터 10월 말까지 20일근로해서 200만원 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일근로해서 20만원이고, 이경우에는 10월 2일 취득 11월 근로소득월액 20만원 해줌.

즉, 두달에 걸쳐 1개월이상이고 8일이상 일한 경우:

최초근무일로 취득신고, 둘째달 1일로 보수변경신고하고

둘째달 보험료를 납부한다.

B: 10월2일부터 11월2일내 8일미만 근로했어도 11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8일이상 근로하였다면 (12월 근로예정없는 경우임)

11/1일부터 취득신고, 11월 소득월액쓰기, 상실일 11/29일 보험료는 11월달 한달분만 납부

두달에 걸쳐 1개월이상이나 8일미만 근로시에는 둘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면 둘째달 1일로 취득신고하고 둘째달 보험료를 납부함.

따라서 노임대장을 말일기준일로 받는 것이 현장에서

1개월8일 기준을 적용하기에 용이함. 25일 기준으로 받으면 불편함.

반면, 8일이상 일했지만 1개월이상은 아닌 경우는 이후에

1개월 이상이 되는 지 다음달 근로여부를 체크한다.



1일자 상실신고와 지역보험료과오납발생

매달 5일까지만 건강연금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월에 대한 보험료만 나오기 때문에 총당이나 과오납금이 나올일이 없습니다.

다만 5일 이후 신고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총당 및 과오납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11월 노임 12월5일까지, 12월 노임 1월5일까지 이렇게 신고하면 과오납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월5일까지 11월노임 신고할 때 12월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나, 그렇다면 1월5일까지는 지역보험료로 근로자 집으로 고지서가 나왔다가 1/5일까지 신고하면 다시 직장가입으로 들어와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매달 취득신고,보수변경신고,상실신고는 5일까지 하도록 합니다. 매월1일자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는 일단 지역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다음달 5일전에 전월 것을 취득신고한 때에 직장으로 변경(상실신고일이 속하는 동일월에 대해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가 이중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건강연금 보험료 고지와 납부실무

일용직 근로자 건강연금신고일

-익월 5일(보험료일괄경정고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15일 까지 신고

(단, 익월15일까지 신고할 경우 전월보험료와 당월 보험료 2개월치 보험료가 고지 됨)

①매월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할 경우

전월 보험료가 당월6일에고지 -> 당월 10일까지 납부

(5일까지 신고 후 6일에 적용 및 고지 해 주는 것: 일괄경정고지)

*당월 6일 고지는 전산으로(EDI)고지됨

②매월15일까지 건강/연금 신고 할 경우

전월보험료+당월 보험료 월말에 고지->익월10일까지 납부

*월말 고지는 사업장으로 고지서가 우편으로 나옴

※15일 이후에 건강/연금 신고 할 경우

전월 보험료+당월 보험료 익월 6일에 고지-> 익월 10일까지 납부

*당월6일 고지는 전산(EDI) 고지 됨

(15일 이후 건강/연금 가입한 근로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말에 사업장으로 나오는 우편 고지서는 폐기하도록 한다.)

※전월에만 근로가 있고 당월 근로 사실은 없는데 15일까지 건강/연금 전월 보험료를 신고 한 경우

당월 근로 사실이 없는데 15일에 신고하여 건강/연금 보험료를(전월보험료+당월보험료) 납부한 경우 익월상실신고를 통해 당월 보험료 금액을 환급 또는 총당이 가능함

요약하면, 보험료일괄경정고지를 신청한 경우 5일이전에 신고하여 당월10일에 전월분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정석이나, 5일과 15일 사이에 신고한 경우는 정 보험료와 당월보험료가 월말에 고지서형태로 송달되어 익월10일에 납부한다.

그런데,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전월과 당월보험료가 익월6일에 전자고지되어 익월10일까지 납부하게되며, 우편고지서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하도록 한다.

전월에만 근로가 있고 당월에는 근로가 없는데 5일과 15일사이에 연금건강신고를 한 경우는 전월과 당월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당월분 보험료는 당월근로가 없으므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익월에 상실신고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

Q | 연금공단에서 받은 문서에 상실일 결정할 때 최종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하면 해당 월의 연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A | 최종근로일 다음날로 상실처리시 해당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과 보험료납부월은 다름

Q | 8/3-8/31 - 7일
9/2-2일(9/1-9/30-2일)
10/5-10/31-8일
의 경우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A | 8월3일 취득 9월1일 보수변경신고 10월이 8일 미만일 때는 10월1일로 상실신고하며, 8월분 연금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시 건강보험정산시에도 8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 만 61세이고
6/10-6/30 18일 근무 (230만)
7/1-7/16 14일 근무(180만)
만61세이므로 연금 취득은 안되고,
건강취득일6/10, 보수월액 180만(8월5일 신고)인지?
그리고 6월 귀속 급여에서는 건강보험 공제 안하고 오늘 신고한 후 고지된 금액
7월 귀속분에서 공제하면 되는 건지?

A | 6/10부터 7/9일 사이에 8일이상 근로가 있으므로 1개월이상 8일이상 근로자이므로 건강취득일 6/10일이고 6월 보수월액230만원으로 취득신고하며, 7/1일자로 보수변경신고(보수월액 180만원)하고 보험료는 6월분공제없이 7월분 신고액만 공제하면 됩니다.

지역보험료와 건설일용직직장보험료

Q |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셔서 5,6월 근로내용/연금/건강 신고를 했음. 이전까지 연금/건강을 지역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셨다고 하는데, 5,6월분은 연금건강 직장보험으로 가입되고 5,6월 지역보험료를 납부한게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는지?

A | 개인사업주 지역보험과 일용직직장건강보험중에 일용직건강보험이 우선적용되므로 지역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5일 이후 신고와 보험료

Q | 건설업 현장 일용직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급여대장이 늦게 와서 오늘 신고를 못할거같음. 5일 지나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도 상관없는지?

A | 5일 이후에 신고해도 되나 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근무월 보험료와 신고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추후 근로가 없는 경우 환급됩니다)

Q | 한 근로자가 A현장에서 3월에 8일 이상 근무를 했다. 다른 현장에서 또 근무 예정이라 따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일정변경으로 4월에 A현장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저번달에 가입을 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지금 할수 있는가? 아님 다음달에 합쳐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늦게 신고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지?

A | 지금 신고 가능합니다. 합쳐서 신고시 보험료만 더 많이 납부합니다.
연체금 가산세는 없지만 취득,상실,보수변경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 인한 보험료 이 중부담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이는 나중에 상실신고 등을 통해 환급됩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한 경우 취득일

취득일:

-처음시작한날~한달되는날까지 8일 이상 일한 경우 = 시작한날

-전월8일미만 일하고 이번달 8일 이상 일한 경우 =이번달 1일

첫두달 걸쳐 1개월 이상 기준 충족하지만 8일 기준 미충족시

Q | 5/21-30 ->7일 근무
6/24-30 ->7일 근무
7/7-30 ->15일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였으면 취득일이 6/1일인지 첫 근무했던 5/24일 인지?
보수 신고는 첫달 제외하고 다음 달부터 하면 되는지?

A | 8일 이상 근로한 7월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7/7일부터 근무를 했어도 7월 이전에 최초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7/1일자가 취득일이 됩니다. 즉,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을 제외하고는 이후부터는 1일자취득이 됩니다.